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08호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민의 날”이란 읍·면·동 추
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
한다.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
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체육회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지역주민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추진위원회 간사는 읍·면·동 행정민원계장으로
한다.

제4조(읍·면·동민의 날 지정) 읍·면·동민의 날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행사비 지원) 군산시장은 읍·면·동민의 날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09호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년 6월에”를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① 군산시의회 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7호 중 “해당 위원회에서”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소장과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천 의원 각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중전의 제8조) 전단 중 “외부”를 “관계공무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u>매년 6월에</u>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u>단,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 <u>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u> ----- ----- . <u><단서 삭제></u></p> <p>제5조(일몰의 권고) ① <u>군산시의회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 (이하 “의회” 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u></p>
<p>제5조(일몰대상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u>해당 위원회에서</u>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p>	<p>제6조(일몰대상 등)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u> --- ----- -----</p>

현행	개정안
<p>8. (생략)</p> <p><u>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u> 시장은 <u>제5조</u>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u>군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소장과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2명</u>으로 한다.</p> <p><u><신설></u></p> <p><u><신설></u></p>	<p>8. (현행과 같음)</p> <p><u>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u> -----</p> <p>- <u>제6조</u> -----</p> <p>-----.</p> <p>② ----- <u>당연직 위원</u>과 <u>위촉직 위원</u>으로 구성한다.</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u></p> <p>④ <u>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u></p> <p>2. <u>위촉직 위원 :</u></p> <p>가. <u>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u></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생 략) <신 설></p> <p>제7조 (생 략)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p>	<p><u>추천 의원 각 1명</u> 나. <u>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 다.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⑤ ----- 2 회 ----- .</p> <p>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u> ③ <u>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u></p> <p>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p>

현 행	개 정 안
<p>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u>외부</u>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9조</u> · <u>제10조</u> (생략)</p>	<p>----- <u>관계</u> <u>공무원</u> 및 ----- -----. ----- ----- -----.</p> <p><u>제11조</u> · <u>제12조</u>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0호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자격) 검사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 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시세”를 “군산시 시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
일 비	200,000원/1일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격) ① <u>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u> 2. <u>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u> 3. <u>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u> 4. <u>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u> 5. <u>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u> 	<p>제3조(자격) <u>검사위원은 군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u></p>
<p>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u>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u></p>	<p>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 -----</p>

현 행	개 정 안
<p>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한다.</p> <p>1. 시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u>변동하여</u> <u>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u></p> <p>2. (생략)</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라북도 도세 및 <u>시세</u>를 체납한 때</p> <p>4. (생략)</p> <p>② ~ ④ (생략)</p>	<p>-----.</p> <p><삭제></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p> <p><u>군산시 시세</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일 비	100,000원/1일	일 비	200,000원/1일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1호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플라잉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플라잉카”란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이 모두 가능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 2. “플라잉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라잉카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플라잉카의 운용과 플라잉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

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라잉카 관련 연구 개발 지원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플라잉카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플라잉카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플라잉카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플라잉카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플라잉카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플라잉카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플라잉카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플라잉카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플라잉카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플라잉카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플라잉카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플라잉카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업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플라잉카의 연구 또는 플라잉카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2호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일하면서 이용하는 화장실·탈의실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4.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적용한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절한 임금·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과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자는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7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5. 노동권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 사업
3.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 지원
4.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노동권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권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

협약의 체결 및 해지, 지휘·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공정거래 지침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시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노동정책협의회

제15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평가에 관한 자문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5.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 자문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에서의 근무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노동행정 및 노동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는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3호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 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 ③ (생 략)</p> <p><신 설></p> <p>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u>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6(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신 설></p>	<p>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 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u></p> <p>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u>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6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4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제34조”를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로 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4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 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 중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및 동조”를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p> <p>8. · 9.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제34조 및 그 밖에 <u>다른 법률</u>----- -</p> <p>8. · 9.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연임</u>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 ⑮ (생략)</p>	<p>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한 차례만 연임</u>----- -----.</p> <p>⑥ ~ ⑮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p>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u>제10조의2</u> ----- ----- ----- ----- -----.</p>

현 행	개 정 안
<p>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u><신 설></u></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p> <p>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u>사용</u>·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다.</p> <p>② (생 략)</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u>사용</u> <u>허가대상</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u>사용</u> · 수익허가의 제한)</p>	<p>제17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행</p>

현 행	개 정 안
<p>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과 같음)</p> <p>②----- ----- <u>사용허가</u>----- -----.</p>
<p>1.·2. (생략)</p> <p>제18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제18조(<u>사용허가</u>) ----- <u>사용허가</u>----- -----.</p>
<p>1. ~ 4. (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 의무</p> <p>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u>----- -</p> <p>6. <u>사용허가</u>----- -----</p>
<p>7. (생략)</p>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u> 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7.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 ----- <u>사용허가</u>----- ----- ----- ----- ----- -----.</p>
<p>1.·2. (생략)</p> <p>제19조(<u>사용·수익허가부</u>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p>	<p>1.·2. (현행과 같음)</p> <p>제19조(<u>사용허가부</u>의 비치) ----- ----- <u>사용</u> <u>허가부</u>----- -----</p>

현 행	개 정 안
<p>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p> <p>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생략)</p> <p>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및 동조 제3항</u>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p>	<p>-----.</p> <p>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행과 같음)</p> <p>①----- ----- ----- <u>사용허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용허가</u>----- ----- ----- -----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u> ----- -----</p>

현행	개정안
<p>을 준용한다.</p>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영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후단신설 2021.05.17.></p> <p>1.·2. (생략)</p> <p>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u>사용·수익</u>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p> <p>4. ~ 6. (생략)</p> <p>⑤ (생략)</p>	<p>-.</p> <p>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2제3항 ----- ----- ----- <u>사용허가</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사용</u> ----- -----</p> <p>4. ~ 6.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u>사용 · 수익허가</u>,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 · 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만료 되거나 중도에 취소 ·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 ·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④ (생략)</p>	<p>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u>사용허가</u> 및 대부) ①----- ----- ----- <u>사용허가</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용허가</u>-----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5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10명” 을 “15명” 으로, “구성한다” 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 을 “위원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을 “시장이”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
3.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언론인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별지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u>위원중</u>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시장이</u>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당연직으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국장 및 과장)</u></p> <p>2. <u>식품관련 대학교수</u></p> <p>3. <u>식품관련 요리전문가</u></p> <p>4. <u>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신 설></u></p>	<p>제12조(구성) ①----- ----- <u>15명</u> ----- ----- <u>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 <u>위원 중</u> ----- ----- .</p> <p>③<u>당연직</u> 위원은 관계공무원(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 --- <u>시장이</u> ----- .</p> <p>1. <u>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p> <p>2. <u>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u></p> <p>3. <u>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4. <u>언론인</u></p> <p>5. <u>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6호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7호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
13조의3제4항, 제36조제7항 및 제48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군산시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
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을 “(유통산업상생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통사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율” 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율” 로, “추진계획” 을 “시행계획”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 및 운영” 을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9명” 을 “11명”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밖에 협의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른다.

제3장의 제목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을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을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산업보존구역” 을 “전통산업보존구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

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하고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을 각각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을 “제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변경대상” 을 “지정·변경·취소대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소비자의” 를 “주민의 소비자”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대규모점포를” 을 “준대규모점포” 로, “대규모점포등의 일부” 를 “대규모점포등의 일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합한 지” 를 “적합한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성립하지 않는” 을 “성립되지 않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분의1이상을” 을 “10분의1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소비자” 를 “주민”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유통에” 를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유통에” 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 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내지 제41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과 같은 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산시 실정에 적절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7항 및 제48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5. ~ 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 유통사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율을 통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유통산업상생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율 ----- ----- 시행계획----- -----.</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군산시</u></p> <p><u>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 및 운영</u>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단서 신설></p> <p>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 해촉, 회의운영, 협의회 업무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사항대로 한다. 또한 회원중 여성회원의 참여율을 40%이상 되도록 노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군산시</u></p> <p><u>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u>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1명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이 밖에 협의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른다.</p>
<p><u>제3장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u></p> <p>제7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u></p> <p>제7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p>

현 행	개 정 안
<p>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u>전통상업보존구역</u>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 ----- ----- ----- <u>전통상업보존구역</u> -----.</p> <p>1. 2.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u>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u></p> <p>2. <u>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u></p>	<p><u>③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하고자 -----</u> ----- ----- -----.</p> <p><u>④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한 -----</u> ----- -----</p>

현 행	개 정 안
<p>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p> <p>1. <u>전통상업보전구역</u>의 범위·위치 및 면적</p> <p>2. <u>전통상업보전구역</u>의 지정·변경 목적</p> <p>3. <u>전통상업보전구역</u>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p> <p>4. (생략)</p> <p>제8조(<u>전통상업보전구역</u>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u>전통상업보전구역</u>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p> <p>1. <u>전통상업보존구역</u>----- -----</p> <p>2. <u>전통상업보존구역</u>----- ---</p> <p>3. <u>전통상업보존구역</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u>전통상업보존구역</u>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 ----- 제7조에 따른 <u>전통상업보존구역</u>을 지정·변경·취소-----.</p>
<p>1. <u>지정·변경대상</u>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p>	<p>1. <u>지정·변경·취소대상</u>----- ----- -</p>
<p>2.·3. (생략)</p> <p>4. <u>주민소비자의</u>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p> <p>제10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p> <p>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u>전통상업보존구역</u> 안에서 <u>준대규모점포</u>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u>전통상업보존구역</u> 안에 <u>대규모점포</u>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p>	<p>2.·3. (현행과 같음)</p> <p>4. <u>주민의 소비자</u> ----- -----</p> <p>제10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p> <p>① ----- ----- <u>준대규모점포</u> ----- ----- <u>대규모점포</u> 등의 일부----- -----</p>

현 행	개 정 안
<p>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3.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u>적합한지</u>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u>성립하지 않는 경우</u></p>	<p>-----.</p> <p>1. 3.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적합한지</u> -----</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1. ----- <u>성립되지 않은</u> -----</p>
<p>2. 3. (생략)</p> <p>4.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u>10분의1이상</u>을 증가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p> <p><u><신설></u></p> <p>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생략)</p>	<p>2. 3. (현행과 같음)</p> <p>4. ----- 10</p> <p><u>분의1이상</u> -----</p> <p>-----</p> <p>-----</p> <p>⑥ <u>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u></p> <p>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u>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u>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생략)</p>	<p>② ----- ----- ----- ----- 주민----- ----- -----.</p> <p>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u>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를 둔다.</u></p>	<p>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 <u>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유통에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은 위원으로 다음</u></p>	<p>② ----- ----- <u>구성하며,</u> <u>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u>각 호의 사람을 위촉할수 있다.또한 위원중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40%이상인 되도록 노력한다.</u></p> <p>1.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u></p> <p>2. <u>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u></p> <p>3. <u>소비자단체의 대표</u></p> <p>4. <u>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5. <u>지역내 거주하는 소비자</u></p> <p><u><신 설></u></p> <p>④·⑤ (생략)</p> <p><u>제14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u></p> <p>1. <u>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쟁</u></p> <p>2. <u>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u></p> <p>3. <u>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쟁</u></p> <p><u>제15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제16조(회의 등) ① ~ ④ (생략)</p>	<p><u>⑤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 규정에 따른다.</u></p> <p>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16조(회의 등) ① ~ ④ (현행과</p>

현 행	개 정 안
<p>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p>	<p>같음) 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내지 제41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8호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생”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중·고등학생이 군산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을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 4. “교통카드”란 중·고등학생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5.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등학생의 교통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 2. 무상교통 전산시스템 · 플랫폼 운영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무상교통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과 시기는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무상교통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군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대상자 현

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 정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중·고등학생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협약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교통비의 지원) ① 시장은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은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2.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19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13만원
- 0.5㎡ 이상 0.8㎡ 미만		22만원
- 0.8㎡ 이상 1㎡ 미만		32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42만원
- 1.3㎡ 이상 1.6㎡ 미만		50만원
- 1.6㎡ 이상 2㎡ 미만		64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75만원
- 2.3㎡ 이상 2.6㎡ 미만		100만원
- 2.6㎡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8만원
- 0.5㎡ 이상 0.8㎡ 미만		12만원
- 0.8㎡ 이상 1㎡ 미만		14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5만원
- 1.3㎡ 이상 1.6㎡ 미만		33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67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면적 3㎡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p>	
<p>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p>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p>
<p>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p>
<p>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2호</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67만원</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117만원</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217만원</p>
<p>라. 1년 이상</p>		<p>400만원</p>
<p>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5호</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80만원</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200만원</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500만원</p>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20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 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월정수당은 2,206,780원으로 한다.”를 “2023년도 월정수당은 2,237,6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② (생략) ③ <u>월정수당은 2,127,490원으로 한다.</u>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2023년도 월정수당은 2,237,6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2021호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개시되는 연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활동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0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6월 10일,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연구활동 기간)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u>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u></p>	<p>제8조(연구활동 기간)----- ----- ----- ----- <u>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 · 개시되는 연도에는 상 · 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활동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u></p>
<p>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u>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u><신 설></u></p>	<p>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u>제10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 · 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6월 10일, 12월 10일까지로 한다.</u></p>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795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항제7호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총무과장, 읍·면·동장”을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략)</p> <p>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 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p> <p>1. ~ 6. (생략)</p> <p>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 <u>총무과장, 읍·면· 동장</u></p> <p>8.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읍·면·동장</u></p> <p>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796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6항” 을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6항” 을 “제5항” 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별표3” 을 “별표 3”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별표2” 를 “별표 2”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 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

제4조제2항 중 “별표2” 를 “별표 4” 로, “제2조 제5항” 을 “제2조제6항” 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군산 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 (제2조제5항 관련)

업소현황

신고번호	제 호	주메뉴	
업소명		소재지	

평가표

구 분		심 사 기 준		배점	평가결과 "○"표시			
대분류	소분류	연번	세 부 항 목	개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음식맛 및 역사성 (50)	음식의 맛	1	○주메뉴의 맛	20	20	15	10	5
		2	○음식의 조화 (음식과 어울리는 그릇, 상차림의 구성 등)	10	10	7	4	1
		3	○메뉴의 창의성, 대중성	5	5	4	3	2
		4	○가격의 적정성 - 음식의 맛 대비 가격의 적정성 여부	5	5	4	3	2
	역사성	5	○업소의 역사성	10	10 (20 년 이상)	7 (15 년 이상)	4 (10 년 이상)	1 (5년 이상)
2.영업 환경 (30)	외부시설	6	○음식점 주변 청결도 및 주차장 확보	5	5	4	2	1
	업소위생	7	○영업장 내부 및 주방 청결도 - 식탁, 의자, 바닥, 벽지, 주방 청결 및 위생 등	10	10	7	4	1
		8	○조리장 개방 여부 - 완전개방(5), 부분개방(3), 미개방(1)	5	5	3	2	1
	개인위생	9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 서빙직원 위생 복장 조리사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5	5	4	3	2
	화 장 실	10	○화장실 관리 상태 - 남·녀 구분, 손씻는 시설 설치, 손세정제 등 구비	5	5	4	3	2
3. 서비스 (20)	음식문화	11	○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등 개인별 찬기 제공 남은 음식 포장 가능 여부	5	5	4	3	2
	개선실천	12	○테이블 준비 상태 - 테이블, 식기류 청결, 앞치마 제공 등	5	5	4	3	2
	인적관리	13	○고객 응대 친절도 - 손님 맞이 및 배웅인사, 좌석 및 메뉴 안내 등	10	10	7	4	1
4. 가산점 (10)	편의시설	14	○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10	10	7	4	1
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						

20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성명

(인/서명)

[별표 4]

『군산 맛집』 재선정 현지 평가표 (제4조제2항 관련) 업소현황

상 호		주메뉴		대표자	
소재지				전 화	

 평가표

세부항목(배점)	배점기준					점수	사유
	탁월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주 메뉴의 지속성 (10)	10	7	5	3	1		
가격의 적정성 (10)	10	7	5	3	1		
주방 위생 (10)	10	7	5	3	1		
화장실 위생 (10)	10	7	5	3	1		
내·외부 청결 (10)	10	7	5	3	1		
종사자 친절도 (10)	10	7	5	3	1		
종사자 위생,복장 등(10)	10	7	5	3	1		
시설의 편의성 (10)	10	7	5	3	1		
주차 편의성 (10)	10	7	5	3	1		
접근 용의성 (10)	10	7	5	3	1		
합 계							

 평가자 종합 의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u>제6항</u>의 현지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p> <p>④ 시장은 <u>제3항</u>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성한다.</p> <p>⑤ 시장은 심사위원이 <u>제6항</u>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u>별지 제2호</u> 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u>별표3</u>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맛집 지정기준은 <u>별표1</u>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u>별표2</u>와 같다.</p> <p>⑦ (생 략)</p> <p><u>제3조(지정자격)</u> <u>맛집으로</u> <u>지정을</u> <u>받기</u> <u>위하여</u>는 <u>개업후 3년이</u> <u>경과</u></p>	<p>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5항</u>----- -----.</p> <p><삭 제></p> <p>⑥ ----- <u>제5항</u>----- ----- ----- ----- - <u>별지 제2호</u>서식----- <u>별표 3</u>----- -----.</p> <p>⑤ ----- <u>별표 1</u>----- ----- <u>별표 2</u>----- -----.</p> <p>⑦ (현행과 같음)</p> <p><u>제3조(지정자격)</u> <u>맛집으로</u> <u>지정</u> <u>신청을</u> <u>하기</u> <u>위해서는</u> <u>군산시에</u> <u>영</u></p>

현 행	개 정 안
<p><u>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신청 할 수 있다.</u></p> <p>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u>별표2</u>의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 후 <u>제2조 제5항</u>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생략)</p>	<p><u>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u>1.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u></p> <p><u>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u></p> <p>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 4</u>----- <u>제2조 제6항</u>-----</p> <p>-.</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2]

『군산 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

- 업소현황 (현행과 같음)
- 평가표

구 분	항 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총 점					
	배 점		탁월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음식 및 위생부 분 (55)	음식 (30점)	음식의 맛 (20)	20	17	15	13	10	7	5	3	1		
		독창적 메뉴 (5)	5	4	3	2	1						
		가격의 적정성 (5)	5	4	3	2	1						
	위생 (25)	주방 위생 (10)	10	9	8	7	6	5	4	3	2	1	
		음식청결 (5)	5	4	3	2	1						
		화장실 위생 (5)	5	4	3	2	1						
		내·외부 청결 (5)	5	4	3	2	1						
서비스및 전통성 부분(25)	서비스 (15)	종사자 친절도 (10)	10	9	8	7	6	5	4	3	2	1	
		종사자 외모, 복장 등 (5)	5	4	3	2	1						
	전통성 (10)	업소의 역사성 (10)	10	7	5	3	(30년이상)(29~20년)(19~10)(10년미만)						
시설 및 환경부분 (20)	시설 (10)	시설의 편의성 (5)	5	4	3	2	1						
		조명,온도상태 (3)	3	2	1								
		실내 쾌적도 (2)	2	1	0								
	접근성 (10)	주차 편의성 (5)	5	4	3	2	1						
		접근 용의성 (5)	5	4	3	2	1						

- 평가자 의견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별표 2]

『**군산 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 (제2조제5항 관련)

업소현황

신고번호	제 호	주메뉴	
업소명		소재지	

평가표

구 분		심 사 기 준		배 점 개 별	평가결과 "○"표시			
대분류	소분류	연번	세 부 항 목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1.음식의 맛및 역사성 (50)	음식의 맛	1	○주메뉴의 맛	20	20	15	10	5
		2	○음식의 조화 (음식과 어울리는 그릇, 상차림의 구성 등)	10	10	7	4	1
		3	○메뉴의 창의성, 대중성	5	5	4	3	2
		4	○가격의 적정성 - 음식의 맛 대비 가격의 적정성 여부	5	5	4	3	2
	역사성	5	○업소의 역사성	10	10 (10년 이상)	7 (10년 이상)	4 (5년 이상)	1 (5년 미만)
2.영업 환경 (30)	외부시설	6	○음식점 주변 청결도 및 주차장 확보	5	5	4	2	1
	업소위생	7	○영업장 내부 및 주방 청결도 - 식탁, 의자, 바닥, 벽지, 주방 청결 및 위생 등	10	10	7	4	1
		8	○조리장 개방 여부 - 완전개방(5), 부분개방(3), 미개방(1)	5	5	3	2	1
	개인위생	9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 서빙직원 위생 복장, 조리사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5	5	4	3	2
	화 장 실	10	○화장실 관리 상태 - 남·녀 구분, 손씻는 시설 설치, 손세정제 등 구비	5	5	4	3	2
3. 서비스 (20)	음식문 화개선 실천	11	○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등 개인별 찬기 제공 남은 음식 포장 가능 여부	5	5	4	3	2
		12	○테이블 준비 상태 - 테이블, 식기류 청결, 앞치마 제공 등	5	5	4	3	2
	인적관리	13	○고객 응대 친절도 - 손님 맞이 및 배웅인사, 좌석 및 메뉴 안내 등	10	10	7	4	1
4. 가산점 (10)	편의시설	14	○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여부	10	10	7	4	1
최 중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 (85점 이상), 부적합 (85점 미만)								

20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성명

(인/서명)

신 규

[별표 4]

『군산 맛집』 재선정 현지 평가표 (제4조제2항 관련)

업소현황

상 호		주메뉴		대표자	
소재지				전 화	

평가표

세부항목(배점)	배점기준					점수	사유
	탁월 흡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		
주 메뉴의 지속성 (10)	10	7	5	3	1		
가격의 적정성 (10)	10	7	5	3	1		
주방 위생 (10)	10	7	5	3	1		
화장실 위생 (10)	10	7	5	3	1		
내·외부 청결 (10)	10	7	5	3	1		
종사자 친절도 (10)	10	7	5	3	1		
종사자 위생,복장 등(10)	10	7	5	3	1		
시설의 편의성 (10)	10	7	5	3	1		
주차 편의성 (10)	10	7	5	3	1		
접근 용의성 (10)	10	7	5	3	1		
합 계							

평가자 종합 의견

군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413호

군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와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직 근로자”란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위원회”는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할 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25조3”을 “제4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검사장”을 각각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장에게”를 “법무부장관에게”로, “검사장의”를 “법무부장관의”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을 “**(소송비용의 회수)**”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승소판결(소취하를 포함한다)로부터 60일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승소판결(소취하를 포함한다)로 확정된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및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5. 기타 사유로 시장이 소송 비용회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공무직 근로자”란 <u>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u></p> <p>9.“위원회”는 「<u>군산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u>」의 “<u>군산시 시정 조정위원회</u>”를 말한다.</p>
<p>제7조(변호사의 선임 등) ① (생략)</p> <p>② 제2조제5호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의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비용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제7조(변호사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소송 수행자의 의무) ①~③ (생략)</p> <p>④ 소송 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p>	<p>제10조(소송 수행자의 의무) ①~③ (생략)</p> <p>④ -----</p>

현 행	개 정 안
<p>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u>검사장</u>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u>법무부장관</u> ----- ----- -----.</p>
<p>제11조(본안 소송수행) ① ~ ④ (생략) ⑤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일을 고려하여 적시에 <u>검사장</u>의 지휘를 받아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⑥ (생략)</p>	<p>제11조(본안 소송수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법무부장관</u>----- ----- -----. 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u>검사장</u>의 지휘를 받아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p>	<p>제12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 ----- ----- ----- ----- <u>법무부장관</u>-----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u>소송비용의 회수대상</u>)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u></p>	<p>제14조(<u>소송비용의 회수</u>) ① (현행과 같음) ② <u>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승소판결(소취하를 포함한다)로</u></p>

현행	개정안
<p><u>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u></p> <p><u>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u></p> <p><u>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u></p> <p><u><신 설></u></p> <p><u><신 설></u></p>	<p><u>부터 60일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u>③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승소판결(소취하를 포함한다)로 확정된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지휘(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u>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4조의2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u></p> <p><u>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u> <u>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및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u> <u>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u> <u>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u> <u>5. 기타 사유로 시장이 소송비용회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u>

군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2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414호

군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군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 총괄적인 청원 관련 업무는 감사담당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이면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법률전문가, 소관 업무 관련 학식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계장이 한다.

제5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6. 제13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영 제15조제1항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면 회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서면 회의일 경우 심의의결서 및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

가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법」, 및 「청원법 시행령」, 「군산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청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심의의견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군산시 청원심의회 위원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군산시 고시 제2022-196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9.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7건, 폐지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2. 12.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 유	도로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윤희리 41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윤희길 152-7	20221206		20070528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름사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366-4, 366-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북내길 40	20221205		20070528	쌍봉리 북내 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22-12, 22-5, 22-13, 22-22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1길 16-1 (명산동)	202212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1길 15 (송창동)		20221202	건물철탈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1길 15-2 (송창동)		20221202	건물철탈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1길 16-1 (명산동)		20221202	건물철탈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45-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29	20221130		20070528	성덕리 성덕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914-7	전라북도 군산시 패총4길 18 (내흥동)	20221130		20191104	예전 내흥동에서 신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된 지점이라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38-7	전라북도 군산시 부골1길 3 (조촌동)	20221206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42-1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434-40 (개정동)	20221128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225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152	20221202		20100125	서원로와 석곡로의 복합명사화 하여 사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92-8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98 (문화동)	20221130	건물신축	20100125	군산대학교를 지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레기 길 23		20221123	건물신축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131-5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뜰아름길 7-3	20221130	건물신축	20111209	뜰아름 마을 명칭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337-3	전라북도 군산시 금성길 151 (산북동)	2022112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337-1	전라북도 군산시 금성길 153 (산북동)	2022112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2길 52 (소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2길 45 (소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 3길 4		20221118	건물철거	20090508	섬이름에 방위 및 서수번호 사용	크리스탈팬션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679-6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46-13 (소룡동)	2022112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4길 9 (소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창1길 5-3 (중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효자길 5-2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효자길 5-4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효자길 11-4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7-19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34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20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30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18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14 (오룡동)		2022111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26 (오룡동)		20221118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24 (오룡동)		20221118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10 (오룡동)		20221118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1 (오룡동)		20221118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5 (오룡동)		20221118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윗길 3-3 (오룡동)		20221118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511-2, 512-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 암초교길 22-2	20221117		20100125	금암리 금암초등학교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27-15	전라북도 군산시 하신재길 8-22 (나운동)	2022111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093-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 수문화길 6-2	20221117		20100125	서수리 문화마을 소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4길 5-32 (선양동)		20221117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신재길 8-22 (나운동)		20221117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1길 7-3 (송창동)		20221117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4길 5-2 (선양동)		20221117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1길 7-6 (송창동)		20221117	건물철회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곶리 390-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망 해산로 333	20221123	건물신 축	20120808	망해로의 어감이 좋지 않고 망해산에서 인용	

군산시 고시 제2022-20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말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말도항)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6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말도항) 사업
 - 나. 명 칭 : 말도리 삼색힐링마을 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6,394㎡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1,708.90㎡, 연면적 1,687.51㎡ (증축)
-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3. 3. 31.
-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산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146	-	잡	6,394	6,394	국 (해양수산부)				

군산시 고시 2022 - 204호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2년 12 월 6 일

군 산 시 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조서

○가축사 육제한지역 변경내역 (km²)

연번	행정명	변경 전 (2021.12)			변경 후 (2022.12)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지역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동지역	99.91	98.55	98.6%	100.83	99.42	98.6%
2	옥구읍	38.33	35.92	93.7%	37.03	35.16	94.9%
3	옥산면	16.74	16.74	100.0%	16.82	16.82	100.0%
4	회현면	38.32	37.57	98.0%	38.34	37.59	98.0%
5	임피면	21.93	21.93	100.0%	21.93	21.93	100.0%
6	서수면	24.24	24.24	100.0%	24.24	24.24	100.0%
7	대야면	37.85	37.85	100.0%	37.85	37.85	100.0%
8	개정면	17.18	17.18	100.0%	16.88	16.88	100.0%
9	성산면	27.21	27.20	100.0%	27.21	27.21	100.0%
10	나포면	31.03	31.02	100.0%	31.03	31.03	100.0%
11	옥도면	23.56	20.62	87.5%	23.59	20.66	87.6%
12	옥서면	20.81	20.75	99.7%	20.78	20.73	99.8%
합계		397.10	389.57	98.1%	396.53	389.52	98.2%

○ 가축사육 제한지역 세부내역

(㎡)

행정명	증감	행정면적	도시지역 (주거, 상업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면적	비율	주거 및 시설 200m이내		주거 및 시설 300m이내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동지역	기정	99,914,454.27	23,225,481.91	23.2%	26,906,310.69	26.9%	35,199,759.86	35.2%
	변경	100,829,400.50	23,241,302.38	23.1%	27,019,542.57	26.8%	35,378,761.11	35.1%
	합계	914,946.23	15,820.47	-0.2%	113,231.88	-0.1%	179,001.25	-0.1%
옥구읍	기정	38,327,381.61	307,118.58	0.8%	19,627,484.52	51.2%	24,112,066.20	62.9%
	변경	37,032,885.09	307,118.93	0.8%	19,653,933.47	53.1%	24,209,174.91	65.4%
	합계	-1,294,496.52	0.35	-	26,448.95	1.9%	97,108.71	2.5%
옥산면	기정	16,737,194.79	218,145.98	1.3%	11,197,000.86	66.9%	14,239,054.86	85.1%
	변경	16,816,262.90	218,146.18	1.3%	11,361,951.54	67.6%	14,399,076.91	85.6%
	합계	79,068.11	0.20	-	164,950.68	0.7%	160,022.05	0.5%
회현면	기정	38,318,722.38	-	0.0%	14,899,116.63	38.9%	19,178,814.07	50.1%
	변경	38,337,050.84	-	0.0%	14,941,243.31	39.0%	19,203,869.48	50.1%
	합계	18,328.46	-	-	42,126.68	0.1%	25,055.41	-
임피면	기정	21,930,279.87	443,804.84	2.0%	13,583,105.31	61.9%	17,609,662.49	80.3%
	변경	21,928,356.60	442,884.58	2.0%	13,606,993.48	62.1%	17,621,801.62	80.4%
	합계	- 1,923.27	- 920.26	-	23,888.17	0.2%	12,139.13	0.1%
서수면	기정	24,240,741.64	-	0.0%	14,312,831.23	59.0%	18,277,717.57	75.4%
	변경	24,240,219.56	-	0.0%	14,328,269.48	59.1%	18,276,999.28	75.4%
	합계	-522.08	-	-	15,438.25	0.1%	-718.29	-
대야면	기정	37,846,438.67	752,080.72	2.0%	18,399,990.73	48.6%	26,012,707.77	68.7%
	변경	37,853,032.94	752,083.59	2.0%	18,700,765.86	49.4%	26,455,223.08	69.9%
	합계	6,594.27	2.87	-	300,775.13	0.8%	442,515.31	1.2%
개정면	기정	17,181,557.74	1,223,050.72	7.1%	10,475,033.54	61.0%	12,807,763.25	74.5%
	변경	16,880,754.33	1,234,322.20	7.3%	10,436,049.25	61.8%	12,696,144.96	75.2%
	합계	- 300,803.41	11,271.48	0.2%	-38,984.29	0.8%	- 111,618.29	0.7%
성산면	기정	27,205,587.70	-	0.0%	17,300,434.49	63.6%	21,057,128.30	77.4%
	변경	27,205,757.89	-	0.0%	17,381,097.88	63.9%	21,070,247.35	77.4%
	합계	170.19	-	-	80,663.39	0.3%	13,119.05	-
나포면	기정	31,025,750.90	-	0.0%	13,732,678.06	44.3%	18,346,014.49	59.1%
	변경	31,026,325.88	-	0.0%	13,820,161.55	44.5%	18,406,196.39	59.3%
	합계	574.98	-	-	87,483.49	0.2%	60,181.90	0.2%
옥도면	기정	23,560,387.35	-	0.0%	5,747,294.35	24.4%	8,086,916.21	34.3%
	변경	23,590,694.91	-	0.0%	5,687,383.78	24.1%	7,884,847.76	33.4%
	합계	30,307.56	-	-	-59,910.57	-0.3%	- 202,068.45	-0.9%
옥서면	기정	20,814,699.40	951.28	0.0%	7,437,505.34	35.7%	9,181,711.48	44.1%
	변경	20,782,705.23	951.31	0.0%	7,417,611.73	35.7%	9,152,610.91	44.0%
	합계	-31,994.17	0.03	-	-19,893.61	-	-29,100.57	-0.1%
합계	기정	398,018,142.55	26,170,634.03	6.6%	173,618,785.75	43.6%	224,109,316.55	56.3%
	변경	396,523,446.67	26,196,809.17	6.6%	174,355,003.90	44.0%	224,754,953.76	56.7%
	합계	-1,494,695.88	26,175.14	-	736,218.15	0.4%	645,637.21	0.4%

○ 가축사육제한지역 세부내역

(㎡)

행정명	증감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주거 및 시설 500m이내		주거 및 시설 1,000m이내		주거 및 시설 2,000m이내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동지역	기정	47,062,234.45	47.1%	65,097,381.64	65.2%	75,320,195.38	75.4%	98,545,675.08	98.6%
	변경	47,243,887.86	46.9%	65,448,190.57	64.9%	76,174,071.96	75.5%	99,415,373.96	98.6%
	합계	181,653.41	-0.2%	350,808.93	-0.3%	853,876.58	0.1%	869,698.88	-
옥구읍	기정	27,277,799.75	71.2%	30,456,433.09	79.5%	35,614,789.94	92.9%	35,921,908.21	93.7%
	변경	27,428,302.92	74.1%	30,301,154.59	81.8%	34,854,351.15	94.1%	35,161,470.07	94.9%
	합계	150,503.17	2.9%	- 155,278.50	2.3%	- 760,438.79	1.2%	- 760,438.14	1.2%
옥산면	기정	16,338,099.36	97.6%	16,519,044.88	98.7%	16,519,044.86	98.7%	16,737,190.82	100.0%
	변경	16,417,339.43	97.6%	16,598,116.71	98.7%	16,598,116.71	98.7%	16,816,262.90	100.0%
	합계	79,240.07	-	79,071.83	-	79,071.85	-	79,072.08	-
회현면	기정	24,518,280.06	64.0%	30,734,432.22	80.2%	37,570,577.76	98.0%	37,570,577.60	98.0%
	변경	24,541,272.73	64.0%	30,770,339.08	80.3%	37,589,307.57	98.0%	37,589,307.57	98.0%
	합계	22,992.67	-	35,906.86	0.1%	18,729.81	-	18,729.97	-
임피면	기정	20,610,922.59	94.0%	21,486,122.17	98.0%	21,486,122.06	98.0%	21,929,926.81	100.0%
	변경	20,612,538.26	94.0%	21,485,472.14	98.0%	21,485,472.14	98.0%	21,928,356.60	100.0%
	합계	1,615.67	-	-650.03	-	-649.92	-	- 1,570.21	-
서수면	기정	21,719,990.06	89.6%	24,240,659.12	100.0%	24,240,659.12	100.0%	24,240,659.13	100.0%
	변경	21,739,686.02	89.7%	24,240,219.56	100.0%	24,240,219.56	100.0%	24,240,219.56	100.0%
	합계	19,695.96	0.1%	-439.56	-	-439.56	-	-439.57	-
대야면	기정	34,313,616.26	90.7%	36,991,522.58	97.7%	37,093,251.94	98.0%	37,845,332.31	100.0%
	변경	34,437,366.15	91.0%	36,999,220.17	97.7%	37,100,949.49	98.0%	37,853,032.94	100.0%
	합계	123,749.89	0.3%	7,697.59	-	7,697.55	-	7,700.63	-
개정면	기정	15,260,382.64	88.8%	15,958,501.87	92.9%	15,958,501.84	92.9%	17,181,552.43	100.0%
	변경	14,971,149.28	88.7%	15,646,432.16	92.7%	15,646,432.15	92.7%	16,880,754.33	100.0%
	합계	- 289,233.36	-0.1%	- 312,069.71	-0.2%	- 312,069.69	-0.2%	- 300,798.10	-
성산면	기정	24,162,350.93	88.8%	26,167,330.88	96.2%	27,203,488.11	100.0%	27,203,488.10	100.0%
	변경	24,162,603.35	88.8%	26,168,122.46	96.2%	27,205,757.89	100.0%	27,205,757.89	100.0%
	합계	252.42	-	791.58	-	2,269.78	-	2,269.79	-
나포면	기정	23,840,746.15	76.8%	28,691,401.63	92.5%	31,024,144.49	100.0%	31,024,144.60	100.0%
	변경	23,866,628.04	76.9%	28,683,482.01	92.4%	31,026,325.88	100.0%	31,026,325.88	100.0%
	합계	25,881.89	0.1%	- 7,919.62	-0.1%	2,181.39	-	2,181.28	-
옥도면	기정	12,078,375.29	51.3%	17,427,701.78	74.0%	20,618,794.15	87.5%	20,618,794.11	87.5%
	변경	11,548,954.92	49.0%	16,819,594.12	71.3%	20,659,022.83	87.6%	20,659,022.83	87.6%
	합계	- 529,420.37	-2.3%	- 608,107.66	-2.7%	40,228.68	0.1%	40,228.72	0.1%
옥서면	기정	11,881,874.40	57.1%	16,735,574.29	80.4%	20,753,080.14	99.7%	20,754,031.35	99.7%
	변경	11,852,539.98	57.0%	16,709,379.74	80.4%	20,731,241.46	99.8%	20,732,192.77	99.8%
	합계	-29,334.42	-0.1%	-26,194.55	-	-21,838.68	0.1%	-21,838.58	0.1%
합계	기정	279,064,671.94	70.3%	330,506,106.15	83.2%	363,402,649.79	91.5%	389,573,280.55	98.1%
	변경	278,822,268.94	70.3%	329,869,723.31	83.2%	363,311,268.79	91.6%	389,508,077.30	98.2%
	합계	- 242,403.00	-	- 636,382.84	-	-91,381.00	0.1%	-65,203.2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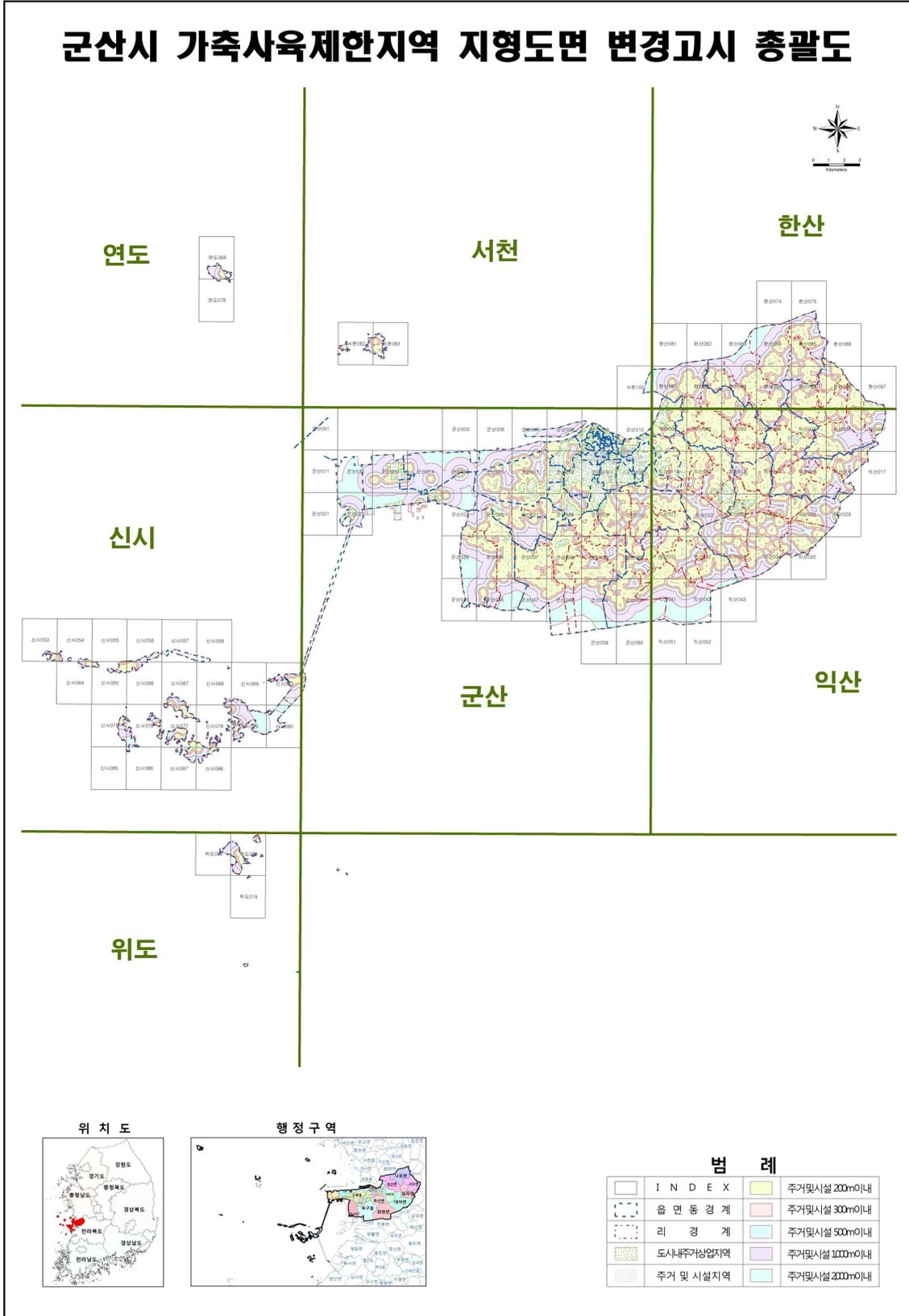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군산시 환경정책과에 비치 및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4. 이해관계인은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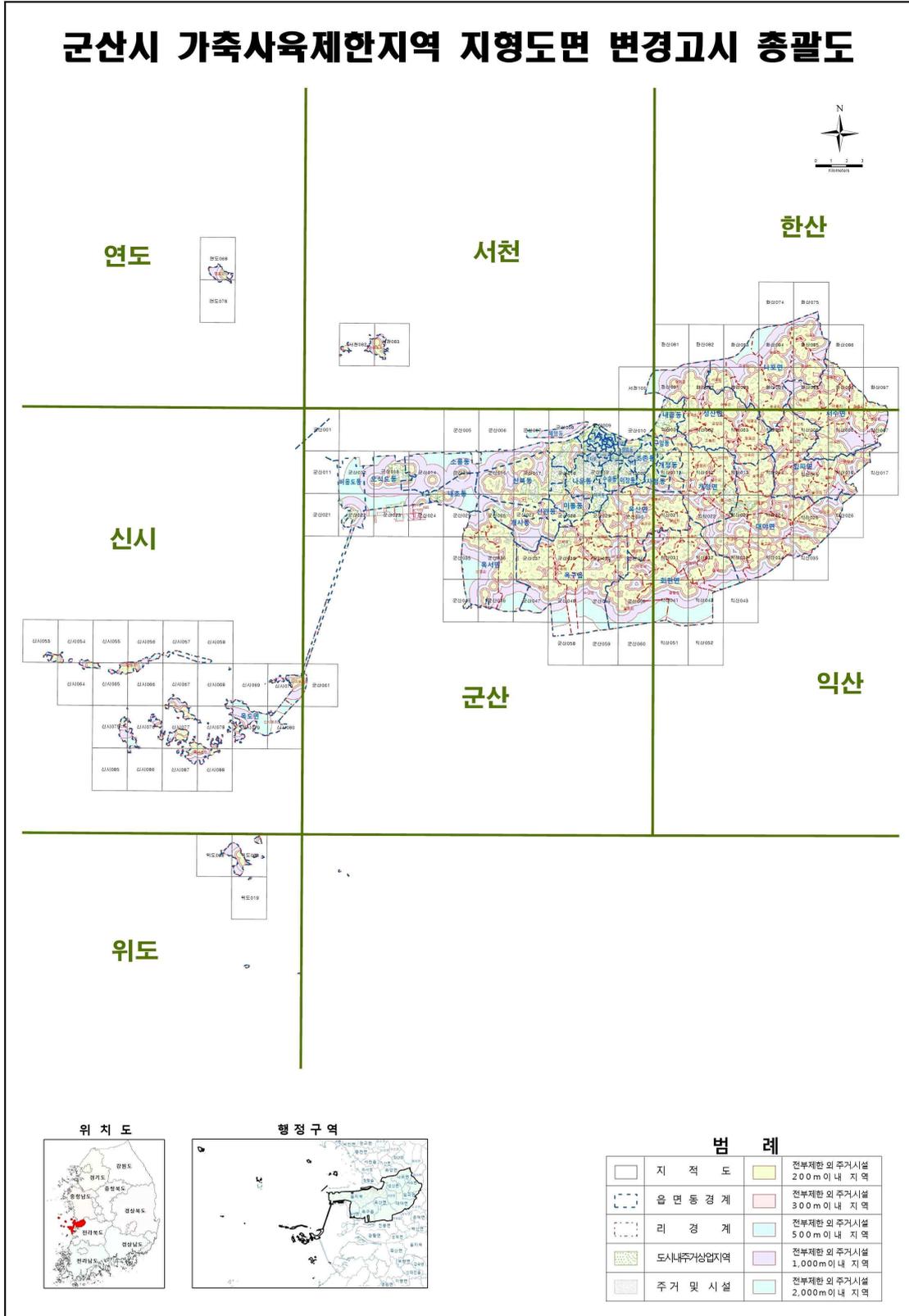
5. 총괄도

○ 기정



6. 총괄도

○ 변경



군산시 고시 제2022 -205호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명 칭 :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위치, 규모, 총사업비

- 가. 위 치 : 군산시 오룡동 897-3번지 일원
- 나. 사업규모
 - 암석절취 및 토공(2,832m³), 우수관 및 수로관 부설 103본, 콘크리트포장(36m²), 낙석방지책(10경간) 및 낙석방지망(106m²), 관목 및 조경식재 등
- 다. 총사업비 : 1,0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0. 1. ~ 2023. 12. (당초 2020. 1. ~ 2022. 12.)

5.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사면유실 및 석축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배수로 및 사면 정비 등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계획	'22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용지보상 · 건축물보상 · 가옥철거 · 사면정비		· 건축물보상 · 용지보상	· 건축물보상 · 용지보상 · 가옥철거 · 사면정비	· 사면정비 · 사업마무리 · 용지보상	
총 사업비	1,000		280	600	120	
· 국 비	500		140	300	60	
· 지방비	500		140	300	60	

9.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오룡동	896-7	대	366	366	차옥* 외 1 인	군산시 오룡길 34-1 (오룡동)				
2	오룡동	896-9	대	132	132	군산시					
3	오룡동	896-8	대	251	251	박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진로 85-5(만촌동)				
4	오룡동	897-9	전	299	299	군산시					
5	오룡동	897-11	전	330	330	군산시					
6	오룡동	897-10	전	330	330	군산시					
7	오룡동	897-12	전	331	331	군산시					
8	오룡동	897-13	전	251	251	이두*	경상북도 경산시 삼 풍로 13-7, 101동 1605호				
9	오룡동	897-1	전	331	331	이명* 외 1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0길 6-2(파 동)				
10	오룡동	897-8	전	411	411	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국 채보상로316, 113동 1403호(평리동, 평리 롯데캐슬)				
11	오룡동	897-6	도	491	203	군산시					
12	오룡동	897-5	전	20	20	김영* 외 2 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 가 65-190				
13	오룡동	898-5	전	235	235	김영* 외 2 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 가 65-190				
14	오룡동	898-4	전	357	357	김영* 외 2 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 가 65-190	주식회사	군산시 죽 성동 44-2	가압류	
								전북상호			
								신용금고			
								군산시			
고양시 덕		압류									
양구청		압류									
고양시 일		압류									
산동구청		압류									
15	오룡동	927-11	대	54	54	군산시					
16	오룡동	896-65	대	1	1	이진* 외 1 인	군산시 오룡동 896-7				
17	오룡동	927-3	대	22	22	군산시					
18	오룡동	896-12	대	23	23	군산시					
19	오룡동	896-11	도	426	426	군산시					
20	오룡동	896-13	대	50	50	군산시					
21	오룡동	896-14	대	7	7	군산시					
22	오룡동	896-10	대	56	56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3	오룡동	896-27	대	40	40	군산시					
24	오룡동	896-29	대	36	36	군산시					
25	오룡동	896-30	대	69	69	군산시					
26	오룡동	896-47	도	3	3	국토교통부					
27	오룡동	896-28	대	56	56	군산시					
28	오룡동	896-5	도	329	12	군산시					
29	오룡동	896-31	대	188	188	군산시					
30	오룡동	896-33	대	10	10	군산시					
31	오룡동	896-4	대	225	225	군산시					
32	오룡동	896-39	전	60	60	군산시					
33	오룡동	896-40	도	3	3	군산시					
34	오룡동	897-4	전	305	305	정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8동 605호(수송동1가, 신세계타운)				
35	오룡동	896-1	전	165	165	군산시					
36	오룡동	897-3	전	198	198	김영* 외 2 인	서울 용산구 한강 로3가 65-190				
37	오룡동	896-38	도	288	8	군산시					
38	오룡동	897-2	전	195	195	김영* 외 2 인	서울 용산구 한강 로3가 65-190				
39	오룡동	898-6	전	33	33	최원*	옥구군 옥산면 사 장리 1				
40	오룡동	896-57	대	662	34	주인*	수원시 권선구 권 선동 1199-1 두산 동아아파트 102동 106호	군산시수 산업협동 조합	나운동 지점	근저당권	
								이광*	서울 강동 구 고덕동 217 주공 아파트 102동 106 호	근저당권	
41	오룡동	896-53	도	23	4	군산시					
42	오룡동	896-67	잡	82	10	군산시					
43	오룡동	897-7	도	187	128	군산시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오룡동	896-7	가옥	스레트	111㎡	차옥*	군산시 오룡길 34-1(오룡동)	
			가옥	스레트	36㎡			
			가옥	스레트	47㎡			
			가옥	스레트	4㎡			
			동백나무	R15	1주			
2	오룡동	896-8	창고	목조	19㎡			
			창고	목조	3㎡			
			창고	목조	2㎡			
			창고	목조	3㎡			
			창고	함석	9㎡			
			뽕나무	R20	20주			
			뽕나무	R15	1주			
			사철나무	R10	19주			
			드릅나무	R5	10주			
			밤나무	R30	6주			
			감나무	R10	1주			
			무화과나무	R30	2주			
			대추나무	R15	1주			
			호두나무	R15	1주			
			복숭아나무	R15	1주			
			복숭아나무	R10	3주			
			보리밥나무	R20	1주			
			소나무	R15	1주			
			은행나무	R15	2주			
			백일홍	R10	3주			
철쭉	R10	15주						
3	오룡동	896-13	나무1	R25	1주			
			나무2	R15	1주			

			사철나무	R10	1주			
4	오룡동	896-31	나무1	R15	1주			
			사철나무	R10	2주			
			향나무	R10	1주			
5	오룡동	897-10	가옥	스레트	24㎡			
			창고	스레트	5㎡			
			창고	스레트	2㎡			
			창고	스레트	6㎡			
			산죽		264㎡			
			나무1	R25	2주			
			소나무	R30	1주			
			과실수	R20	1주			
			뽕나무	R35	1주			
			뽕나무	R30	4주			
			뽕나무	R20	6주			
			나무2	R10	4주			
			사철나무	R15	2주			
			사철나무	R10	3주			
			버드나무	R35	1주			
감나무	R20	1주						
6	오룡동	896-1	은행나무	R40	1주			
			감나무	R20	2주			
			나무1	R20	2주			
			나무2	R15	1주			
7	오룡동	897-3	사철나무	R10	2주			
			뽕나무	R30	2주			
8	오룡동	897-8	창고	까데기	3㎡			
			창고	까데기	4㎡			
			벗나무	R30	1주			
			뽕나무	R30	1주			

			사철나무	R10	1주			
9	오룡동	897-6	벗나무	R30	40주			
			소나무	R25	2주			
			나무1	R40	1주			
			과실수	R15	32주			
10	오룡동	898-5	과실수	R10	8주			
			사철나무	R10	5주			
			은행나무	R15	11주			
			밤나무	R15	1주			
			나무	R30	10주			
11	오룡동	896-57	나무	R30	10주			

군산시 고시 제2022 - 2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2. 5.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2. 주 소 : 군산시 소룡동 설림길 11
3. 공사내용 : 새만금 호안 및 접안시설 축조관련 공사용 제작장 조성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2호방조제 전면해역
5. 공사면적 : 32,951m²
6. 공사기간 : 2022. 12. 5. ~ 2023. 6. 30.

군산시 고시 제2022 - 20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1-91호외 2)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122호(2018.09.2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1호외 2)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9.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9-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1호외 2)사업
 - 나. 명 칭 :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중로 1-91호선 도로개설 폭원: 20m, 연장: 175m, 면적: 4,724㎡
 - 나. 소로 1-379호선 도로개설 폭원: 10~13m, 연장: 140m, 면적: 1,921㎡
 - 다. 대로 3-28호선 기존도로 정비 연장: 260m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빌딩 11층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가. 당초 2018. 09. 21. ~ 2022. 06. 30.
 - 나. 변경 2018. 09. 21. ~ 2025.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중로1-91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개정면 통사리	179-4	도	66	44	양*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		179-6	도	86	8	양*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		181	도	77	4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개정면 개정면 농업협동 조합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113-3	근저당		
4		203-12	도	70	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5		211-1	답	5,355	23	이*희	군산시 개정면					
						이*승	군산시 경암동					
						이*경	군산시 나운동					
						이*	순천시 조례동					
6		211-7	답	398	29	이*승	군산시 경암동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		212-2	답	438	438	진*광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조*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근저당	당초	
						진*광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조*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근저당	가압류 변경	
								메리츠캐 피탈(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23층(여의도동)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8	212-4	답	167	160	양*웅	군산시 개정면						
9	213-1	답	208	208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촌동)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10	213-2	답	3,375	160	이*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이*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	213-4	도	46	4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12	213-5	답	3	3	김*명	옥구군 개정면						
13	213-7	도	165	16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14	213-8	답	195	195	이*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이*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5		214	답	1,560	1,560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동춘동지점)	근저당	
16		214-3	답	7	7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촌동)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17		214-4	도	56	7	국	농림수산부				
18		214-5	도	26	26	국	농림수산부				
19		214-7	답	65	21	국	건설교통부				
20		214-8	도	1,066	97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1		214-9	답	86	27	국	건설교통부				
22		216-7	도	2	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3		216-10	도	90	9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4		216-11	답	570	19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5		216-14	답	308	180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6		564	도	2,168	292	국	건설부				
계		26필지		16,653	4,724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소로1-379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212-5	답	895	895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	개정면 통사리	212-8	답	347	347	진경건설	군산시 법원로 17, 2층(조촌동)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신탁	
3		216-11	답	570	551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4		216-14	답	308	128	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계			4필지		2,120	1,921					

군산시 고시 제2022 - 2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7.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4호 (2022. 12. 6.)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흥과)
-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3-8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6,300m²
-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5호 (2022. 12. 6.)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흥과)
-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 85-10번지 인근 공유수면

⑤ 면 적 : 10,900m²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 고시사항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6호 (2022. 12. 6.)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홍과)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17-1번지 인근 공유수면

⑤ 면 적 : 39,400m²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 고시사항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7호 (2022. 12. 6.)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홍과)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산 147번지 인근 공유수면

⑤ 면 적 : 6,500m²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 고시사항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7호 (2022. 12. 6.)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홍과)

-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산 147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6,500m²
-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8호 (2022. 12. 6.)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흥과)
-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35,100m²
-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9호 (2022. 12. 6.)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흥과)
-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15-46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6,200m²
-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10호 (2022. 12. 6.)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산진흥과)
- ③ 허가목적 :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자연석 투석, 대상종 : 해삼)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39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2,000m²
- ⑥ 허가기간 : 2022. 12. 06. ~ 2027. 11. 30.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2 - 209호

군산시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군산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2.

군 산 시 장



- 기준일: 2023. 01. 01.
- 적용기간: 2023. 01. 01 ~ 2023. 12. 31.
-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 길급: 7,000원
 - 로급: 12,100원
- 납부방법: 군산시 수입증지 및 전자결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 - 212호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 나. 구역명칭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기남
-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78-1. 2층 (나운동)

4. 준공인가의 내역

- 가. 준공인가일 : 2022년 12월 09일
- 나. 정비구역 면적 : 37,173.6㎡
 - 1) 공동주택 : 33,601㎡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78-1, 2층 (나운동)

2) 사업시행자 성명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마. 사업기간 : 2022. 6. 17. ~ 2022. 11. 30.

바. 사용 또는 수용 토지조서

○ 대로3-2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831-8	대	479.0	479.0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2	나운동	831-10	대	16.8	16.8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계	2필지			495.8	495.8						

○ 중로1-74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831-3	대	1,142.3	368.0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2	나운동	831-5	대	191.1	191.1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3	나운동	831-6	대	632.1	632.1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4	나운동	831-9	대	1.3	1.3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5	나운동	831-1	대	303.4	303.4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6	나운동	831-12	대	53.9	53.9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7	나운동	831-13	대	99.9	99.9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계	7필지			2,424	1,649.7						

○ 소로1-31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831-3	대	1,142.3	454.6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2	나운동	831-4	대	204.0	204.0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계	2필지			1,346.3	658.6						

○ 소로1-314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831-3	대	1,142.3	319.7	나운주공 2단지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7-1, 4층				
계	1필지			1,142.3	319.7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아. 관계도서 : 실음 생략

6.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 - 2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2.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0-00030호 (2022. 12. 0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상래(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4길 68)
- ③ 허가목적 : 어구야적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39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314m²
- ⑥ 허가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0-00007호 (2022. 12. 0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박덕구(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87)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36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112m²
- ⑥ 허가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8-00008호 (2022. 12. 0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신동환(군산시 연도1길 16-4,연도상회)
- ③ 허가목적 : 불법어업 감시 CCTV 설치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산8번지 1호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m²
- ⑥ 허가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7-00006호 (2022. 12. 0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이형민(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9)
- ③ 허가목적 : 어구야적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13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67m²
- ⑥ 승인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0-00012호 (2022. 12. 0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최남동(군산시 옥도면 무녀도2길 175-1)
- ③ 허가목적 : 어구적재 및 주꾸미, 고동손질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7번지 1호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302m²
- ⑥ 승인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0-00004호 (2022. 12. 0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최점념(군산시 옥도면 개야도3길 5)
- ③ 허가목적 : 멸치건조 및 선별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36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053m²
- ⑥ 승인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 고시사항

- ① 승인연월일 : 군산시 2017-00003호 (2022. 12. 0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최점념(군산시 옥도면 개야도3길 5)
- ③ 허가목적 : 어구정리 및 작업장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13-2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642m²
- ⑥ 승인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2 - 2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지곡동 12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코리아신탕(주)
 - 나. 대 표 자 : 백인균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8월 31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2년 12월 13일
- 5. 주택건설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26 외 90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33,171m²
 - 라. 건축면적 : 6,856.0978m²(건폐율 : 20.67%)
 - 마. 연 면 적 : 121,855.6578m² (용적율 : 240.68%)

바.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외, 633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633				
84A	민영주택	305	84.9557	23.3157	108.2714	
84B	민영주택	157	84.4877	23.4351	107.9228	
111	민영주택	19	111.3666	30.5224	141.8890	
114	민영주택	26	114.5886	31.8345	146.4231	
136	민영주택	124	136.5068	36.1796	172.6864	
250	민영주택	2	250.0114	67.8515	317.8629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87,254,901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6.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

가. 변경전 : (주)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나. 변경후 : 코리아신탁(주) 대표 백인균

7.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2572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9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조성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65,379.5m²

가. 도 로(19개 노선) : 47,851.8m²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건고228 ('86.5.23)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1	120	21~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20	21~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 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 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	
결정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나. 주차장(1개소)(변경) : 2012.3㎡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결정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3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3	-	

다. 녹 지(4개소)(변경없음) : 12,482㎡(도로 중복결정 142㎡)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1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1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78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78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142)	군산고2014-141 (2014.12.26)	중복 결정
시행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142)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라. 공공공지(1개소) : 3,033.4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4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4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1) 사업시행자 주소

당 초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변 경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32, 3층

2) 사업시행자 성명

당 초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퍼스트, (주)디오션시티쓰리

변 경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 초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1.
- 4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12. 31.

변 경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1.
- 4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5.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2-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87	장	23,414	41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3,414	415						

2) 대로 3-4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87	장	24,275	8,64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2-29	장	625	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2-30	장	1,863	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6,763	8,662						

3) 중로 1-11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5	장	12,705	4	코리아신탭(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2	조촌동	41-23	장	8,163	3,99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	조촌동	41-30	장	93	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	조촌동	3964	도	20,028	4,07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41-34	장	1,592	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1,658	4,078						

4) 종로 1-12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87	장	23,414	10,53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3964	도	20,062.8	68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41-33	장	610	6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2-103	장	45	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2-104	장	45	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44,176.8	11,975						

5) 종로 2-14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1,822	코리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저주지점)	근저당	
합계				42,177	1,822						

6) 종로 2-14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26	장	1,975	1,97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3964	도	20,062.8	5,11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41-34	장	1,592	1,59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41-16	장	29	2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2-30	장	1,378	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5,036.8	8,713						

7) 종로 2-14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28	36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28	366						

8) 종로 2-14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26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262						

9) 종로 2-14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42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425						

10) 종로 3-74(폐지)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장	85,561	9	코리아신탭(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합계				85,561	9						

11) 종로 3-7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도	42,177	1,991	코리아신탭(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합계				42,177	1,991						

12) 종로 3-7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7,19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7,194						

13) 소로 3-77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3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32						

14) 소로 3-77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3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32						

15) 소로 3-77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71						

16) 소로 3-77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71						

17) 소로 3-77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1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17						

18) 소로 3-77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1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15						

19) 소로 3-78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4	도	20,062.8	1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062.8	114						

(2) 주차장

1) 주차장 8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3966	차	2,012.3	2,012.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2,012.3	2,012.3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암동	320-28	장	162	16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2	구암동	321-18	대	28	28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3	구암동	321-20	대	55	55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4	조촌동	2-24	장	2,350	2,35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합계				2,595	2,595						

2) 완충녹지11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암동	274-12	장	2,345	2,3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구암동	276-4	대	22	2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구암동	276-23	대	14	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2-27	장	842	84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2-29	장	570	56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6	구암동	274-15	장	121	12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7	구암동	276-27	대	1	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8	조촌동	2-100	장	62	6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계				3,977	3,971						

3) 완충녹지111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 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2-30	장	1,378	1,36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2-88	장	518	51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1,896	1,878						

4) 완충녹지112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 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36-12	구	48	4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2	조촌동	36-14	구	20	2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3	조촌동	50-5	구	107	10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4	조촌동	50-7	구	71	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5	조촌동	55-2	구	37	3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6	조촌동	55-3	구	19	1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7	조촌동	2-32	장	597	59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8	조촌동	2-92	장	27	2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9	조촌동	41-25	장	457	45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0	조촌동	41-28	장	2,240	2,24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1	조촌동	41-18	장	2	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2	조촌동	41-19	장	345	3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3	조촌동	41-22	장	57	5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4	조촌동	57-1	구	1	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5	조촌동	57-3	구	3	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6	조촌동	704-5	도	5	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17	조촌동	704-8	도	2	2	국토교통부					
합 계				4,038	4,038 (142)						

※()는 중복결정 면적임

(2) 공공공지(변경)

1) 공공공지 33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 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3965	도	3,033.4	3,033.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합 계				3,033.4	3,033.4						

군산시 공고 제2022-258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1.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2022. 12. 09.

군 산 시 장



다 음

□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	- L=1,100m B=3→7m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817-5번지 일원

2. 사업기간 : 2020년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4. 토지조서 내용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과에 토지조서 등 비치
5. 보상시기 : 2022. 12월 ~ 협의 완료시까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진행 → 보상금 지급

7.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토지소유자: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달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봄.)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22 12. 09. ~ 2022. 12. 23. [15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4-3664)

■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815-2	구	470	470	국(기획재 정부)					
2		799-12	답	82	82	최*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90	군산원예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하포로 29	근저당 권 지상권	
3		800-15	답	12	12	정*일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90				
4		798-15	답	79	79	최*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안길 9-1				
5		798-17	답	14	14	최*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안길 9-1				
6		798-14	답	81	81	최*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안길 9-1	옥구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 권	
7		798-16	답	93	93	최*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안길 9-1	옥구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 권	
8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817-5	답	232	232	조*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9-6				지분 1/4
조*연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188,				지분 1/4	
9		817-4	답	15	15	조*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08				
10		279-5	대	4	4	강*오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278				
11		279-6	대	41	41	강*오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278				
12		278-2	대	53	53	강*오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278				
13		223-3	도	10	10	홍*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4-3				
14		226-6	도	26	26	김*복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29				
15		223-4	대	14	14	정*용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30	옥구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 권	
16		223-5	대	178	178	정*용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30	옥구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 권	
17		224-2	전	204	204	서*석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37				
18		224-3	전	453	453	서*석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37				
19		223-6	답	1	1	홍*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4-3				
20	224-4	전	2	2	서*석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37					
21	220-1	전	54	54	함*희	전라북도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 용	
							옥구읍 상평리 207				
22		217-6	전	12	12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84-2				
23		217-5	전	30	30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484-2				
24		217-10	전	56	56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484-2				
25		217-7	전	1	1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84-2				
26		216-1	전	14	14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안길 4(경장동)				
27		216	전	39	39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안길 4(경장동)				
28		217-11	전	87	87	송*웅	군산시 경장동 484-2				
29		217-8	전	5	5	송*웅	경장동484-2				
30		217-12	전	124	124	송*웅	경장동484-2				
31		215-1	대	5	5	서*석	215	옥구농업 협동조합 남군산새 마을금고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군산시 미룡로 30	근저당 권	
32		산5-2	임	1	1	김*삼	주소없음				
33		산5-1	임	14	14	김*삼	주소없음				
34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산6-1	임	55	55	최*수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41				
35		217-9	대	333	333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84-2				
36		산3-1	임	397	397	한*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7-3	군산시수 산업협동 조합	군산시 조촌로 123	근저당 권 지상권	
37		218-1	전	26	26	전*숙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안길 43-2	옥구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 권	
38		산1-3	임	410	410	김*성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17				
39		산13-3	임	2	2	최*수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41				
40		산6-3	임	283	283	최*수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41				
41		산7-1	임	187	187	이*복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5-27				
42		213-4	전	160	160	김*현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19 (조촌동 동신개나리아파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3		213-6	전	100	100	유*심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19				
44		197-2	전	203	203	박*례	204				
45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13-5	전	55	55	김*성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17				
46		213-3	전	47	47	김*성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17				
47		산1-4	임	7	7	김*성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17				
48		196-5	전	79	79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84-2				
49		196-4	전	7	7	송*웅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84-2				
50		198-2	답	33	33	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나길 15-6				
51		796-9	답	197	197	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나길 15-6				
52		193-9	잡	61	61	국(기획재 정부)					
53		193-11	잡	9	9	국(기획재 정부)					
54		795-14	답	77	77	최*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90	군산원에 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하포로 29	근저당 권	
55		산33-6	임	48	48	송*재	군산시 나운동 401 삼성아파트				
56		산33-5	임	10	10	송*재	군산시 나운동 401				
57		산34-2	임	17	17	김*길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142(수송동)				
58		산34-3	임	8	8	김*길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142(수송동)				
59	794-4	답	247	247	최*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90	군산원에 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하포로 29	근저당 권 지상권		
60	792-12	답	627	627	고*석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489					
60필지				6,191	6,191						

※ 추후 지적분할로 편입 지번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물건조서

일련 번호	물건의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EA	m	그 루	동	주소	성명	
1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78-2	건물	화장실 2.5m x 3.5m				1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78	강*오	
				조적담 H=1.8		23					
				함석담 H=1.8		5					
2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23-5	건물	벽돌조 (단독주택 83.68㎡)				1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30	전*용	
				컨테이너 4.5m x 3.5m	1						
				창고 5.6m x 5.2m				1			
				철제펜스 H=1.2		47					
철제구조물	1										
3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17-9	건물	창고 5.4m x 6.5m				1	군산시 경장동 484-2	송*웅	
4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817-4	수목	사철나무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08	조*연		
				향나무			1				
				소나무			1				
5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78-2	수목	사과나무			5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78	강*오		
6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24-2	수목	감나무			2	군산시 옥구읍 신덕길 37.	서*석		
7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16	비석	비석	1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51,	강*순	
8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194-4	CCTV	CCTV	1						
9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777-15	비석	비석	1				서울특별시 중랑 구 망우동 178-84	조*연	
10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산33-3	계사	계사	1				군산시 나운동 401	송*재	
11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787-30	사설표지 판	사설표지판	1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33-15	상*까페	

